

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21-6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0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,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무상사용 필요성

- 사회복지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문제에 선제적 대응,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
-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재단 사무실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무상사용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무상사용 면적
염리종합사회복지관	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50(염리동)1층	159.60㎡ (1층 일부)

※ 염리종합사회복지관: 2021. 8. 20. 준공예정

다. 사용기관 : 마포복지재단

라. 사용용도 : 재단 사무공간(사무실, 임원실, 교육실, 기탁물품 보관실)

마. 사용기간 : 2021. 11. 1. ~ 2026. 10. 31.(5년)

바. 사 용 료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‘면제’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
【(재) 마포복지재단 설립개요】

- 설립주체/형태: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재단법인, 공익법인
- 기본재산: 50억원('21년 20억원, '22~'24년도 매년 10억원씩 출연)
- 출범시기: 2021. 11.
- 운영재원: 구 출연금, 이자수입, 후원금, 기타
- 조직·인력: 이사회(이사15명), 감사(2명), 사무국(2개팀 7명)
- 주요사업: 지역자원 발굴·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민·관 협력사업,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

참고자료

관계 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
제8조(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